-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2436호

2019. 12. 1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 12. 16. 신상균 의원 외 17인

나. 회부일자 : 2019. 12. 16. 복지건설위원회

다. 상정일자 :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 12. 17.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윤인숙 의원)

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받아야 하나, 양천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은 33년간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음.

나. 서울시는 이미 내구·사용 연한을 초과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보수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다. 이에 서울시는 33년이 경과한 자원회수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양천구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훈)

○ 본 결의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누리지 못하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바람을 수렴하여, 환경부가 정한 내구·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이전,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사용 연한 연장을 위한 보수 사업 계획 중단을 서울시청에 촉구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또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하지만,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은 집단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있어 인근의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등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을 위협받고 있음.

- 특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주변영향지역 간접영향권에 해당하는 주민은 3,413세대에 이르며, 심지어 50미터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체 유해물질의 영향이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사료됨.

【표 1】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세대 수

계	목동1단지아파트	한신청구아파트	한신빌라트
3,413	1,882	1,512	19

○ 또한, 2018년 3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17시간여만에 진화가 되었는데, 이는 쓰레기 더미속에서 자연발화된 것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양천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은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으며, 특히,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함.

○ 하지만, 서울시는 2016년「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에는「정밀안전진단」까지 하며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이전 보다는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대보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인해 33년간 고통을 겪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주거복지권, 재산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지역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볼

수 있음.

- 또한, 23년째 가동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환경부가 세운 지침인 소각설비의 내구·사용 연한인 15년을 훌쩍 초과했기 때문에 보수사업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노후시설임. 양천자원회수시설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는 1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등 리스크가 매우 높음.

○ 이에 양천구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첫째, 33년이 경과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둘째, 양천자원회수시설 사용 연한 연장을 위한 보수 사업 계획을 중단하고, 양천구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양천구의회가 주민들의 대의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양천구의회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봄.

○ 따라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소관하고 있는 서울시청에 이송하는 것은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보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7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